

## 動力資源部告示 (第81-188号)

石油事業法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石油精製業者 또는 原油 輸入者 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基準価格 및 同法 제17조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年 4月 27日

動力資源部長官

###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위한 基準価格 原油 또는 石油製品의 輸入에 따른 損失補填基準

#### 1.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위한 基準

##### 가. 基準価格

基準価格은 原油의 본선인도가격(FOB)을 기준하여 1 배럴당 31.44달러에 677.80원 / 달러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나. 石油事業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해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##### (1) 備蓄基金

備蓄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輸入原油 1 배럴당 1 달러에 선적일로부터 30일되는 날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##### (2) 安定基金

安定基金에 정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輸入原油 1 배럴당 3 달러 50센트에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#### 2. 原油 및 石油製品輸入에 따른 損失補填基準

가. 令 제9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原油를 기준가격보다 高価로 도입하는 경우의 高価差額에 대한 보전금액은 (原油의 實

도입본선인도가격 ×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 - 基準価格) × 1.036363에서 原油를 基準価格보다 低価로 도입한 경우의 低価差額 [(基準価格 - 原油의 實도입본선인도가격 ×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) × 1.036363]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, 이 경우 공제할 低価差額이 高価差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次期 원유도입 高価差額에서 공제한다. 다만, 原油의 實도입본선인도가격 또는 그 수입부대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청산할 수 있다.

나. 令 제9조의 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石油製品의 輸入에 따른 1 배럴당 손실보전금액은 [石油製品의 輸入価格 (운임 · 보험료 포함価格에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) ×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]에서 税前 工場渡価格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### 附 則

(1) 이告示는 1981년 4월 19일 이후 통관된 分부터 적용한다.

(2) 이告示 시행이전에 통관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例에 의한다.

(3) 動力資源部告示 제80-158호(80. 11. 19) 및 제81-182호(81. 3. 2)는 이告示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